해양·수산관련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1.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7호, 2009. 12. 21

○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 다만, 기관의 검사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3호 바목에 따를 수 있다.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 제9854호, 2009. 12. 29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게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심판정"을 "심판정(審判廷)"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열석하다"를 "참석하다"로, "참작하다"를 "고려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에 참여하는 도선사에 대해서도

음주 도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음주운항을 방지하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도선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도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선박직원법 개정

▣ **법률 제9874호, 2009. 12. 29**

○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면비행선박을 이 법의 선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면허규정을 신설함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시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벌칙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

5. 수산업법 개정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 외해(外海)양식어업을 면허어업으로 규정

– 기존의 내해(內海) 중심의 양식어업은 한정된 어장에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적조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 제약과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으로 경쟁력 및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만 양식어업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우려가 없고 생산성이 높은 외해양식어업의 개발이 필요함

– 외해양식어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면허어업으로 하여 그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함

– 외해양식어업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양식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 규정

– 외해양식어업은 대규모시설로 새로운 기술력과 투자가 예상되는 어업임으로 기술과 자본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인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 면허어업의 우선순위는 종전에 그 어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어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음

–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① 외해양식어업의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② 내만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③ 내만의 가두리양식어업권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④ 위 ② 및 ③ 외의 자로서 어업인, 어업법인, 지구별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 선정한 자

– 외해양식어업에 기술과 자본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해양식어업의 발전이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 명시

–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보호를 위해 그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 ·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보호가 기대됨

○ 구획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사용어선 규모 증톤

– 현행 구획어업에 허용된 어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규모가 적어 정치성구획어업은 어구설치 및 어획물운반 등 조업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어구로 바닥을 끌어 조업하는 형망어업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과 조업의 편익도모를 위해 사용어선의 증톤이 필요함
– 구획어업 중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 제도를 도입하고 그 관리선의 규모와 척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정하도록 하며, 형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8톤까지의 증톤을 허용하도록 함
–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조업편익을 도모함

6.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호, 2010. 2. 11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65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전부개정안) 부칙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0년 2월 1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
2. 선체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가 변경되는 개조를 하는 선박
3. 종전에 최대로 인정받은 항해구역 또는 항해예정시간보다 확대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

7.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220호, 2010. 2. 17

○ 신기술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도입

– 기존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 등을 사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국제표준화(ISO) 규격,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이 없어서 제때에 상품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기술전문위원회의 설치

-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기술 등을 사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 개정 신청권 부여

-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대상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관련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 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그 대상자들의 시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8.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84호, 2010. 4. 1

○ 정기점검과 계속점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화

- CSC협약에는 정기점검과 계속점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혼선을 빚고 있음
- 정기점검과 계속점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피하고자 함

○ 컨테이너 점검방법을 현상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 컨테이너 점검방법에 대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점검방법에 대한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음
- CSC협약 규정과 같이 컨테이너 점검시 컨테이너 외부를 현상 점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피하고자 함

○ 계속점검시 일상검사는 점검기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할 점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상점검도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CSC협약에 따라 일상검사는 점검기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컨테이너 점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협약 체약국의 컨테이너를 임차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승인한 데칼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컨테이너 소유자는 임대인 또는 위탁인의 협약 체약당사국이 승인한 표시를 사용중이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한 표시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 초래
- 임대인 또는 위탁인의 체약당사국이 승인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우리나라 컨테이너 소유자의 불편 해소

○ 점검기록에 대한 보관방법을 전자문서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 점검기록을 전자문서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점검기록의 전산화가 불가능
- 전자문서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도 기록으로 인정하여 컨테이너 점검자의 편의 제공 및 전산화 촉진

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 평가를 바탕

으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금지, 어구의 사용금지, 수면의 관리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 관리방안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내용,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등 수산자원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시 · 도지사는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 · 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의 조사 · 평가의 내용 등

– 수산자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 · 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조사 ·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매년 해역별 ·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조사 ·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수산자원의 조사 · 평가계획에는 어종의 분포, 수산자원 변동의 추이 및 어획노력량의 변동 등에 관한 조사계획과 수산자원량의 변동 요인 및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자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등 수산자원의 보호조치 구체화

–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어구 · 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어류 · 패류 등 수산자원의 종류에 따라 포획 ·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 구역 · 수심 · 체장 · 체중을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근해어업 · 연안어업 등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별표 3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구체화하는 한편, 어업의 종류별로 사용이 제한되는 어구의 규모 · 형태 · 사용방법,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와 같이 정함

– 수산자원에 대한 어종별 · 구역별 금지 또는 제한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과도한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조치

–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시 · 도지사는 어린 고기의 남획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의 개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총허용어획량의 할당기준

–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설정한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어업자별 · 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시 · 도지사가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과거 어획실적 및 어획능력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하는 때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도록 함

– 총허용어획량의 범위에서 적정량의 어획을 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대상 및 부과기준 등

– 어업면허 ·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 등에게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금액을 부과 · 징수하되, 그 면제기준, 부과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맨손어업 ·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를 한 자,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을 면제하는 한편,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및 감액기준을 각각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이 정함

–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수면의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 구체화

– 법률에서 수산자원의 산란 등을 위한 수면과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 또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절차,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을 별표 16과 같이 정하는 등 수면의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을 구체화함

–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를 통하여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 · 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0.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11.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9호, 2010. 4. 21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20호, '10. 2. 17)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 등을 사용한 선박용물건 등의 시험기준을 심의하는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구명설비규칙(LSA Code) 개정협약의 국내기준 수용내용중 경과규정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신기술제품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신기술제품의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필요
- 전문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국제구명설비규칙(LSA Code) 개정협약의 국내기준 수용과정에서의 오류 수정

- '10. 7. 1부터 발효되는 LSA Code 개정협약의 국내기준 수용과정에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 규정의 오류 발생
- 국제기준을 수용함에 있어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12.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승인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6호, 2010. 4. 26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이하 "협약"」 부속서 제6장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이나 개정협약의 발효일('10. 7. 1)까지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협약 발효일부터 국적 선박이 협약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고 원활하게 국제항해를 할 수 있도록 협약 서류의 정부승인 절차 등을 정하여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정부승인

- 원유 운송 유조선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대기중에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음
- 국적 선박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정부 승인받아 비치, 시행토록 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함

○ 선박에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비치 · 기록의무화

- 선박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존 설비에 대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
- 오존층파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련설비와 충전량 · 배출량 등을 기록토록 함

○ 선박에 연료유전환절차서 비치 · 시행 의무화

- 국제항해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발틱해, 북해) 항해시 일반해역 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유로 전환하고 있으나, 절차서 없이 연료유를 전환하여 배출규제해역에서 황산화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음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 시행토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고자 함

13.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 28

○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한시어업의 허가절차 등

– 특정한 수산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시 · 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절차 및 한시어업의 허가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시 · 도지사는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 평가의 결과, 시 ·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의 과거 3년 동안의 어획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어업 허가하도록 함

– 한시어업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절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이나 신청자의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어선 등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때마다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4.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9호, 2010. 5. 3

○ 구명정의 정원 산정기준, 방수복 · 노출보호복의 요건 등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개정사항('10. 7. 1 시행)을 수용

○ 어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어선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운용 중 미비점 보완

○ 구명정 및 팽창식일반구조정의 정원 산정 시 화물선의 성인 기준체중을 75kg에서 82.5kg으로 함

○ 자유강하식구명정, 구명부환, 구명동의, 방수복, 노출보호복의 일반요건을 새로 규정함

○ 어선 관련 규정을 삭제함

15. 어선안전 공간 확대 등을 위한 검사 지침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2914, 2010. 5. 7

○ 어선의 안전성 및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폐위용적이 증가된 어선에 대한 검사방법을 정함

○ 수산업법령에 따라 어선의 규모가 정해진 연 · 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복지공간, 선미 부력부, 선측 부력부가 증설된 경우에 적용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127호, 2010. 5. 13

○ 구명조끼 착용으로 수상레저활동에 방해를 받는 서프보드의 이용자에게는 구명조끼 대신 보드리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7.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 법률 제10291호, 2010. 5. 17

○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 · 개발 · 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 어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되었으나, 기르는 어업센터의 사업 범위가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는 등 시급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 · 개발 · 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 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 · 운영하고, 업무의 전문성 ·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 · 개발 · 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 · 운영할 수 있고, 그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산자원사업단이 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둠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사업단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8. 수산업법 개정

▣ 법률 제10292호, 2010. 5. 17

○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

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르는 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 · 개발 · 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 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기르는어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9.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22호, 2010. 5. 20**

○ 곡류 운반 선박소유자가 화물창내 곡류의 이동방지를 위해 정해진 곡류표면고정방법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외국항만당국의 요청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완화 함.

20.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23호, 2010. 5. 20**

○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학력에 의한 진입장벽의 폐지 및 견습경력 완화

21.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3호, 2010. 5. 26**

○ 수면비행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설비에 대한 특례 신설

○ 선원실의 높이 및 연료유탱크 재질 규정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조항을 완화 및 개선

○ 어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어선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운용 중 미비점 보완

○ 선내외기의 연료유탱크 재료를 강재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계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선원실의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기존에는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2.0미터 이상

○ 어선 관련 규정을 삭제함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 5. 31**

○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도록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 관리방안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공포, 4.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절차 및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 · 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어업인단체 등이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산자원의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어업자협약의 내용 등
-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폐지할 경우의 승인절차, 어업의 자율관리를 할 수 있는 어업인단체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자율적 어업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제17조)
- 수산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승인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시험용 · 연구용 · 학습용으로 필요하거나 양식용 · 방류용으로 적합한 품종 등에 대하여 국내반입을 승인하도록 하고, 양식용 종묘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등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도록 함
-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총허용어획량에 따라 할당된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 실적의 보고 등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어업자별 · 어선별로 배분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할 때마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 · 도지사는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를 정지하도록 함
-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관리
-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 · 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한 수면 등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게 하려는 때에는 어선 · 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 · 채취량 및 포획 · 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어업인 등에게 포획 ·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3. 선박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2195호, 2010. 6. 10**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선박소유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선박등록특구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절차규정을 정비하며 법률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4.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246호, 2010. 6. 10**

○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절차규정을 정비하고, 선박 등록 단계에서 공유지분을 표기하도록 하며, 선박 기관의 출력표시 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249호, 2010. 6. 17**

○ 외국 국적 선박의 임시항해검사의 완화

– 현재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엄격한 임시항해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선박수주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내 조선소에서 자체 임시항해검사 등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검사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 ·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대상의 구체화

– 현재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 고시인 선박시설기준에 포괄적으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항해용 간행물 중 해도를 대신하여 전자해도를 비치하는 경우 백업장치 및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기준 및 요건은 선박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예인선 항해검사 면제대상 선박의 추가

–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은 통상적 예인선과 달리 항해검사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예인선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으로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을 추가하여 현실에 부합한 예인선 항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

–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2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252호, 2010. 6. 30**

○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원동기) 중 고속기관 등 특수구조로 된 기관은 제작기술과 내구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현행 기관 개방검사

주기는 5년 또는 기관 가동시간 9,000시간 중 먼저 도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선의 경우처럼 운항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개방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선박소유자가 제조자가 정한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을 지속적으로 정비 및 점검하는 때에는 제조자가 정한 개방검사 시기까지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고속기관의 성능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st.or.kr) 제 · 개정법률에 게재하였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고객의 현장애로기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부대행검사팀
☎ 032-260-2288~9 / Fax. 032-260-2235
E-mail : it@kst.or.kr